



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」 개정에 따른 방염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, 실내장식물 등 설치 공사 시 방염대상 물품 및 권장물품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 대상 확대

(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19조) <시행 2019.8.6.>

방 염 대 상		
·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운동시설 (수영장 제외)	·노유자 시설	
·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	·숙박 가능한 수련시설	·숙박시설
·방송국 및 촬영소	·11층 이상인 것 (아파트 제외)	·다중이용업소
·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[추가]		
·종합병원, 요양병원, 정신의료기관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의원 [추가]		

■ 방염대상물품 사용 권장 대상 확대

(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) <시행 2019.8.6.>

기존 방염대상물품		⇒	개정 방염대상물품	
법적 대상	·커튼류 ·카펫 ·벽지 (두께 2mm 미만) ·합판, 목재 ·암막, 무대막 ·간이 칸막이 등		법적 대상	·커튼류 ·카펫 ·벽지 (두께 2mm 미만) ·합판, 목재 ·암막, 무대막 ·간이 칸막이 등
권장 대상	·침구류, 소파, 의자	권장 대상	·침구류, 소파, 의자 ·천장,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(옷장, 찬장 등) [추가]	

■ 벌칙사항

-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: 과태료 200만원
(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)
- 방염성능검사 조치명령 위반 시 :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(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2)

문의처 : 서대문소방서 예방과 ☎ 02) 3141-3319 / 소방청 화재예방과 ☎ 044) 205-7447

